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월 24일, 신정훈의원 등 2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정훈 의원)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공공기관 등의 경상적 경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사용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그 기관의 경상적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현 행	개 정 안
	·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u>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사용</u>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적 경비란 공공기관 등이 매 회계연도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시설 유지비·관서 경비·이자 지급·매년 계속되는 사업소요 경비 등이 해당됨.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경상적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우선 다음 표와 같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총괄 조례를 통해 각종 지출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각종 지출의 지급 근거 마련 조례(광역시자치단체)]

연번	조례명	내용
1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지역화폐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③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u>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정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u> 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9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③ 시장은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번	조례명	내용
6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u>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u>
7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u>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u>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⑥ 도지사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u>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수당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u>
9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등) ③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u>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장려금,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u>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u>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u>

연번	조례명	내용
11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상품권 이용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u>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u>
12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u>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u>

다음으로 특정 지출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서 해당 지출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경우 같은 법¹⁾은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성남시·순창군 등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의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있음.

1)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조례]

연번	조례명	내용
1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u>상품권</u> 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② 수당은 현금 또는 <u>지역화폐</u> 로 지급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의 경우에도 다음 표와 같이 울산광역시는 조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농어민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조례]

연번	조례명	내용
1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③시장은 농어민수당을 시 관할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u>울산사랑상품권</u>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부천시·춘천시·청주시·부여군·남원군·목포시·남해군 등은 조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 동 수당은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바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맞춤형 복지혜택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조례(일부)]

연번	조례명	내용
1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지역화폐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③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정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시상품권</u> 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상품권</u> 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7조(활성화 정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포상금 및 시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지역화폐</u> 로 지급할 수 있다.
4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9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⑤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상품권</u> 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상품권</u> 으로 지급할 수 있다.
6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장려금 및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출산장려금, 농업분야 소득 보전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지역화폐</u> 로 지급할 수 있다.
7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상품권</u> 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번	조례명	내용
8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u>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u>
9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남해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u>

이와 같이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상적 경비의 일정비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하게 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3조³⁾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임금 또는 보수 및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경상적 경비 지출을 의무화 하더라도 그 사용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인력규모, 예산규모, 자금사정, 해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지역의 상품권 유통여부 및 발행량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경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경상 경비인 임금 또는 보수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충돌된다는 점 및 지방공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 만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상품권의 할인 혜택이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